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질의응답 추가 안내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023.6.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나. 의료보장혁신과-896호(2023.6.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통보"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 산정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민승철	행정사무관	전예진	의료보장혁신과	전결 2023. 8. 16.
협조자				장	강준
시행	의료보장혁신과-1330	(2023. 8. 1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86	팩스번호	044-202-3983	/ msc99@korea.kr	/ 대국민 공개